

청소년활동안전공제(수련기타) 안내 자료

□ 개요

○ 가입대상

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(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 등)

○ 피공제자

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
 - ※ 만 19세 기준일: 공제중앙회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(수련기타)에 가입한 대안교육기관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
- 「청소년활동안전공제(수련시설) 보통약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

※ 피공제자(청소년)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

- 취득: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
- 상실: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, 피공제자가 청소년활동을 마친 때, 피공제자가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전학한 때,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,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때

○ 보장기간

- 매년 3월 1일 ~ 다음해 2월 말(1년)
 - ※ 연도 중 가입한 경우 가입승낙일로부터 2월 말일까지

○ 공제료

- 청소년 1인당 약 16,000원 내외(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변동)

(청소년 1인당 110원 × 활동일수 × 80%(20% 할인 적용*))

*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20% 할인 미적용

※ 청소년 명단[붙임 2]에 기숙사생 미 표기(N)로 인한 할인 공제료 납부 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

※ 대안교육기관 활동에 대한 사고율 증가에 따라 할인율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

○ 보상범위

- 청소년수련시설장의 관리·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**생명·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**로 인한 손해
-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등 청소년수련시설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**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**(일사병, 접촉성 피부염 등)으로 인한 손해
-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**제3자**에 대하여 **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**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○ 보상한도

구 분		보 상 한 도	
청소년	인적 손해	1사고당 10억원(요양, 간병, 장해, 유족급여, 장의비 등) 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	
		사망·장해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 ※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	
	물적 손해	1사고당 200만원	
제3자 배상		대인손해	· 1사고당 10억원 · 사망·장해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
		대물손해	1사고당 200만원

※ 대물 손해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에 한함

○ 가입 방법

가입방법	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(https://ssifins.schoolsafe.or.kr:4443/)에 청약서 제출
납부금액 계산 방법	$\text{청소년 수} \times 110\text{원} \times \text{활동일수} \times 80\% \text{ (기숙사생일 경우 20\%할인 미적용)}$ <p>※ (예시) 10명이 190일 활동할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전원 기숙사생N: $10\text{명} \times 110\text{원} \times 190\text{일} \times 80\%$ 2) 전원 기숙사생Y: $10\text{명} \times 110\text{원} \times 190\text{일}$ 3) 일부 기숙사생Y: $(5\text{명} \times 110\text{원} \times 190\text{일}) + (5\text{명} \times 110\text{원} \times 190\text{일} \times 80\%)$

○ 사고처리 및 보상 절차



① 사고통지	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*>에 입력 * 공제중앙회 홈페이지(ssif.or.kr) → [중앙회 공제사업] → 중앙회 업무처리시스템 (사고통지·공제급여) 클릭
② 사고통지 접수	사고통지 접수·보완·반려
③ 공제급여 청구	청구서류 파일을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첨부하여 청구
④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	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※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
⑤ 공제급여 지급	·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·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(공문 발송)
⑤-1 이의신청	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 우편발송
⑤-2 심의결정 및 통보	·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·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재결서 통보(등기우편)